

연말정산 공제내역과 필요한 서류(2011.12.31현재)

구분	공제요건	공제금액	필요서류	
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본인 ·배우자 ·부양가족: 직계존속·남, 여 60세 이상(1951.12.31이전출생) ·직계비속-20세 이하(1991.1.10이후출생) ·형제, 자매-20세 이하 60세 이상 ·6개월 이상 위탁아동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1인당 150만원 ·※소득금액(이자·배당·부동산임대소득 포함)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·(※부양가족 공제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첨부-부양가족 인적사항 기재 시 필요) 	
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경로우대자-70세 이상(1941.12.31일 이전출생자) ·장애자공제-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·부녀자공제-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,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·차녀양육비공제-6세 이하(2005.1.10이후출생)의 직계비속(임양자, 위탁아동포함)이 있는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 ·다자녀추가공제-나이와 관계없이 2명 이상이면 공제됨(손자불포함) ·출생, 입양자 공제-해당기간에 출생, 입양신고를 한 경우(1명당 연200만원공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1인당 연 100만원 공제 -1인당 연 200만원 공제 -1인당 연 50만원 공제 -1인당 연 100만원 공제 (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) -2인당 연100만원공제(1명추가시 200만원 늘어남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·장애인-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-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②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-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③기타 장애인-장애인증명서 	
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(사용자부담금 제외) ·공무원연금법·군인연금법·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·별정우체국법에 기여금 또는 부담금 ·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 ·보장성보험료 ·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전액공제(사용자부담금 제외) ·한도-100만원 ·한도-1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·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·※자동차 통장사본으로도 공제 가능 	
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의료비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본인, 장애인, 경로우대자 의료비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공제대상 의료비=의료비지출액(한도 없음) (※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8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) ②공제대상 의료비=의료비지출액-(총급여액 8%) (한도70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의료비지급명세서 ·의료기간이 발행한 영수증 (신용카드 중복공제가능) ·11년 1월 -11년 12월 사용분(12개월)
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교육비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근로자본인(대학원교육비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) ·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비속·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·영유아·취학전아동 ② 초·중·고등학교 ③ 대학생 ·장애인특수교육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한도-전액공제 ·※연령제한 받지 않음 ·한도-1인당 300만원 ·한도-1인당 300만원 ·한도-1인당 900만원 ·한도-전액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교육비납입영수증 (공납금납입영수증) ·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·교육비납입영수증 (공납금납입영수증) ·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·방과후학교수업료, 급식비, 교과서구입비

구분	공제 요건	공제 금액	필요서류	
특별	주택자금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택마련저축공제: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% ②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: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%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: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%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: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 ⑤ 월세액 소득공제: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3,000원 이하 부양가족있는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-①+②+③+④의 합계1,000만원 ※ ①, ②, ③, ⑤, ⑥의 공제한도는 각300만원 - 월세금액의 40%(월세보증금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, 원리금 상환증빙서류(무통장입금증 등)
	기부금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정기부금(국가, 무료·실비의 사회복지 시설등)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③ 지정기부금(사회·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 등 공익성기부금, 노동조합비, 교원단체회비,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) * 특례기부금 폐지 (2011년 07월01일 이전 특례기부금은 공제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액(근로소득금액 범위내) 한도-(근로소득금액-①-②)×80% 한도-(근로소득금액-①-②-③)×80% (종교단체는 1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부금납입증명서 (기본공제대상자-직계존손, 형제자매 포함)
일반	연금저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연금(본인명의 2000.12.31이전 가입분 불입액의 40%) 연금저축(본인명의 2001.1.1이후 가입분 불입액) 퇴직연금(불입액 전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-72만원 한도-4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연금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※ 통장사본제출로 공제 가능
	투자조합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 본인 명의로 출자(투자)한 출자액의 15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-소득금액의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조합출자(투자)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 신청서
	신용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사용액(11.01.01~11.12.31사용분)이 급여의 25% 초과시 초과금액의 20%공제(직불카드는 25%공제) 사용금액=신용카드+직불카드+기명식선불카드+현금영수증+확원지로 납부금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금액-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확인서 지로나부영수증 또는 확인장이 발급하는 확인수강료 지로나부확인서
세액공제	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금액-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
	정치자금기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당(후원회 등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-10만원(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할수 있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자금영수증 (무정액영수증, 정액영수증)
	주택자금차입금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5.11.1~97.12.31중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액공제신청서, 미분양주택확인서,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,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
외국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출세액 외국이근로소득금액+근로소득금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	

※ 2011년도 2개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】 및 【소득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】를 제출해야 함. (연말정산서류 1월 31일까지 (늦어도 2월 첫째 주 까지) 부탁드립니다.)